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"자본시장법") 제 8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 제 3 항 제 5 호에 따른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아래 -

- 1.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입니다.
- 2. 자본시장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## [소규모펀드 여부 공시]

운용펀드	투자자펀드	협회표준코드	발생일자
		(투자자펀드)	
AB 숏 듀레이션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AB 숏 듀레이션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종류 A	KR5370A96091	2023-09-11
AB 숏 듀레이션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AB 숏 듀레이션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종류 C	KR5370A96109	2023-09-11
AB 숏 듀레이션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AB 숏 듀레이션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종류 I	KR5370A96125	2023-09-11
AB 숏 듀레이션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AB 숏 듀레이션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종류 Ae	KR5370AP1045	2023-09-11
AB 숏 듀레이션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AB 숏 듀레이션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종류 Ce	KR5370AQ0053	2023-09-11
AB 숏 듀레이션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AB 숏 듀레이션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종류 S	KR5370AQ0061	2023-09-11